

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740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. 2. 20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2. 2. 26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2. 3. 25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이유

-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자격 요건 중 이장 1인당 장학생 수를 명확히 하기 위함.

3. 주요골자

- 불명확한 단어 정정(제2조)
- 이장자녀장학생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이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한다.(제2조)
- 제4조제2항중 이장 1인당 선발자녀수의 균형을 삭제한다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장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중·고등학교 자녀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있어 정부나 단체의 이중지급 등 명확성이 결여된 사항을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학생수별·학교간·읍면간 균형유지 차원에서 해당조항을 정비·보완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장학금 지급에 대한 자격부여와 지속적으로 지급 받을수 있는지?
- 답 : 현 시점에서는 성적 60/100이상일 때 자녀수 관계없이 지급하고 있음.
- 문 : 국가, 자치단체, 민간단체 등 이중지급에 대한 규정보강에 대하여 현재까지 장학금 지급은 이장의 사기양양 차원에서 지급하는

것으로 아는데 이중지급 확인여부의 한계점과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잘못 지급시 관련 공무원의 위법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수정 검토할 용의는?

- 답 : 민간단체 등 이중지급은 지급범위의 균형성 문제이므로 시행규칙을 보강하여 명확을 기하고자 함.
- 문 : 이장장학금 지급의 목적은 학교성적에 대한 격려 차원 이므로 새마을지도자장학금, 장애자장학금, 기타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참고하여 적용하되 포괄적으로 준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에대한 조치는?
- 답 : 민간단체 지급 등 이중지급에 대하여는 규정을 세분화하여 보강토록 하되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.

6. 토 론

- 장학금 지급 개정안에 대한 토론안은 이장 사기양양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중지급에 대하여 민간단체만은 삭제하자는 의견과 이장장학금 지급은 타 조례에 비교하여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토론결과 원안대로 개정기로 하였음.

7. 심사결과

- 2002. 3. 2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